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3.5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2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3월 5일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이창열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. 12. 31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과 관련하여, 우리 구 감면조례 조문 중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된 사항은 삭제하고, 조례에 위임한 감면율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

나. 주요내용

(1) 안 제1조에서는 감면조례 제1조(목적)을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감면사항 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)뿐만 아니라 개별

조문에서 감면율을 감면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따라” 를 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” 로 인용법규를 개정함

- (2)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4항에서 100/100범위 내에서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규정되어, “재산세를 면제한다” 를 “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” 라고 서울시 전체가 통일시켜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율을 규정함
- (3) 안 제4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, 안 제5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, 안 제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, 안 제9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조항 등 4개의 조항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항을 삭제함
- (4) 안 제19조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감면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“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” 를 “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” 로 개정함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. 12. 31일 개정 공포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구세감면조례 제4조(지방공사에 대한 감면)등 4개의 조항이

이관 신설되어,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한 종교단체
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며, 인용법규 및 규정조문을 명확하게
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를
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